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장대상자와 배우자 합장 유형 추가 등〉

■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96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대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안장 대상자와 배우자 합장 유형 추가	3
2. 균형법 상 일정 범죄행위자를 국립묘지법 상 안장제외 대상에 명시	6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2. 3. 17.
3. 회부일 : 2022.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합장 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이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음에도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는 안치가 불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제5조제4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법에 따른 내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군인·군무원 등이 반란·이적·살인 등의 유사 범죄를 범한 경우 신분상의 이유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국립묘지 안장

제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 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Ⅲ. 검토의견

1. 안장 대상자와 배우자 합장 유형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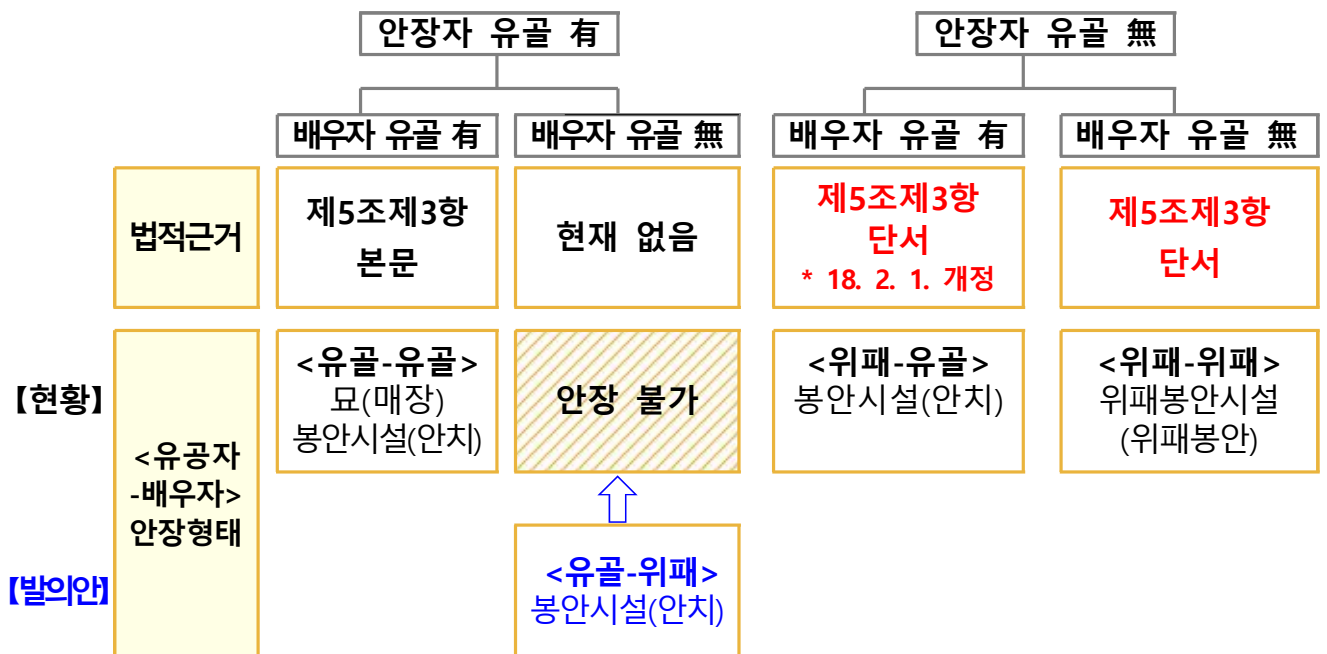
☐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할 수 ---.</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허

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 함께 봉안시설에 안치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음.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전몰자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안장자의 유골 존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 합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장자의 유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간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유가족의 상황에 따라 합장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장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법 제5조제3항 본문에서 안장자의 유골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장자의 유골이 있고 배우자의 위패를 그와 함께 안치하는 경우를 “합장” 개념에 포함하여 본문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수 있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u>합장</u>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u>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 개정안은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제외 대상으로 명문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3호).

– 6 –

<u><신 설></u> 4. · 5. (생 략) ⑤ · ⑥ (생 략)	<u>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람</u> <u>나. 「군형법」 제5조부터 제6</u> <u>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u> <u>범,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u> <u>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u> <u>미수범, 제16조의 죄, 제53</u> <u>조의 죄, 제59조의 죄, 제80</u> <u>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u> <u>그 미수범, 제92조부터 제9</u> <u>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u> <u>미수범, 제92조의6부터 제9</u> <u>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u> <u>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u> <u>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u> <u>람</u> 4.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 제5조제4항은 국립묘지 안장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법상 내란 · 외환 · 살인 등의 죄 등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에 해당함.²⁾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

○ 그런데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분상의 이유로 균형법이 적용되고,³⁾ 이 경우 균형법상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립묘지법상 안장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국립묘지 안장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죄를 범하여 균형법에 따라 금고

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3) 「균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범상 안장 당연배제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 적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장 대상 확인을 위한 행정적 비용, 임시안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5조제4항나목의 각 죄의 나열 과정에서 적시한 ‘미수범’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미수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 6788-5112

봉안시설에 안장자 또는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 합장

1. 목적

- 국립묘지 안장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최선 및 유족 참배 편의 도모

2. 추진방향

- 봉안시설에 안장자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유골이 없어도 위패 형태로 합장할 수 있도록 개선



위패 설치 전



위패 합장 후

3. 추진계획

가. 영정·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의 유골 형태로 합장

-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유골을 안장자의 위패와 함께 봉안당 또는 **봉안당**에 합장 가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개정('18. 2. 1. 시행)

나. 봉안시설에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 합장

- 유골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된 안장자의 배우자가 산골 등의 사유로 유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 합장 가능('20. 9. 8.)

* 국립묘지 봉안시설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 합장 업무지침(국립묘지정책과-1775)

참고 2

안장 유형 참고 사진

1. 유공자, 배우자 모두 유골이 있는 경우 묘에 매장 또는 봉안시설 안치



묘에 매장



봉안시설 안치

2. 유공자, 배우자 중 한 분만 유골이 있는 경우 봉안시설에 안치



<국가유공자 위패-배우자 유골>



<국가유공자 유골-배우자 위패>

3. 유공자, 배우자 모두 유골이 없는 경우 위패봉안시설에 위패봉안

